

중국 해협양안 중재센터(海峽兩岸仲裁中心) 중재규칙의 특징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의 시사점* **

Features of Arbitration Rules of Chines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nd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Rules
of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양효령***

Hyo-Ryoung Yang

〈 목 차 〉

- I. 序
 - II. 중국의 중재제도 개관
 - III. 해협양안중재센터(海峽兩岸仲裁中心: ACAS)의 개관
 - IV.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의 특징과 주요 내용
 - V.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의 시사점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해협양안중재센터,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 남북경협,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당사자자치의 원칙, 중재절차, 시사점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17년 한중법학회(제115회)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임.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 yanghr21@jbnu.ac.kr

I. 序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최근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역거래 총액을 살펴보면 약 807억 달러로 중국의 대외 무역액의 4.7%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액은 192억 달러이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15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7번째 무역국인 동시에 6번째 수입국이기도 하다.¹⁾

이렇듯,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²⁾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은 자본의 유입과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교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안 정부는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만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 중화 경제권 구축과 통일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정치적·경제적 입장이 모두 고려된 실리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투자 및 민·상사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통해 양안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협상, 조정, 중재 및 소송 4가지가 있다. 이들 분쟁해결 방법 중 ‘중재’는 양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 혹은 발생 후에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사건을 비(非)사법기관의 제3자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여 구속력을 가진 판결을 하고,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한 의무를 집행하는 일종의 분쟁해결 방법을 말한다.³⁾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중국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대만 관련 민·상사 사건은 총 30,165건이 되며,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244개 중재기관에서 약 13.6만 건의 중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62개의 중재위원회가 섭외사건, 홍콩·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한 바 있다.⁴⁾

1) 劉冰, “《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述評-以比較研究爲視角”, 『海峽法學』, 第4期, 2016, pp.48.

2)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중국인민이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는 변화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과 법리적 기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이며, 또한 중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주권을 향유하고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중 대만에 대한 주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에서 ‘하나의 국가’라 함은 ‘국가주권의 불가분성과 중화민족의 통일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통일 이후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의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며, 홍콩·마카오 및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행정구로써 중앙정부의 수권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일 뿐임.

3) 吳杰 編著, 『仲裁法精要與依據指引』, 人民出版社, 2005, p.3.

4) 范利敏·姜業宏, “《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正式實施-打造仲裁先行窗口 助推兩岸經貿法制化”, 中國貿易報, 2016.6.4.자. 접속일 2017.08.05, <http://www.chinatradenews.com.cn/>

또한, 중국과 대만 양안 정부는 경제교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⁵⁾을 체결하였고, ECFA의 후속조치인 「ECFA 투자보장협정(海峽兩岸投資保護和促進協議, Cross strait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을 통해 투자분쟁 및 ‘투자상사분쟁(投資商事爭議)’을 해결하고 있다.⁶⁾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무역추진위원회(中國國際商會)에서 양안 간에 발생한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해협양안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CAS, 海峽兩岸仲裁中心)(이하, ‘양안중재센터’라 칭함)를 설립하였고,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海峽兩岸仲裁中心 仲裁規則)」(이하, 「양안중재규칙」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양안중재센터’와 「양안중재규칙」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貿易仲裁委員會, CIETAC) 중재규칙」(이하, 「CIETAC 중재규칙」이라 칭함)과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사 및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제정해야 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중재제도 개관

중국의 현행 중재제도는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은 1994년 8월에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참조하여 제정 되었으며,⁸⁾ 중재제도를 ‘국내중재’와 ‘섭외중재’⁹⁾로 구분하고

5) 2010년 6월 29일 중경에서 체결되었으며, 동년 9월 2일 발효됨.

6) 중국과 대만 양안의 투자분쟁 및 ‘투자상사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주요 내용은 양효령,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12 참조.

7) 남북한 경제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정부와 북한은 2002년 12월 16일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및 2003년 10월 12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2013년 9월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남북경협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사 및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양효령, 위의 논문, pp.366 참조.

8) 현행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은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 통과 되었으며,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의 「부분 법률개정에 관한 결정(關於部分法律的決定)」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이 되었으며, 2017년 9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의 「‘중국 법관법’ 등 8부 법률 개정(關於修改‘中國法官法’等8部法律的決定)」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음.

있다. ‘섭외중재’는 주된 사무소와 국내에 있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는 국제중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중국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자본이 투자된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당사자가 된 중재사건은 섭외중재사건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중재는 「중재법」에 따라 행정부에서 분리된 민간기관인 ‘중재위원회’¹⁰⁾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¹¹⁾ 1회의 중재로 종결하는 ‘一裁終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한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¹²⁾ 중재합의는 주된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중재를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조항의 독립성’이 보장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분쟁은 먼저 중재절차로 진행되고, 만약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지키지 않고 중재합의의 쟁점이 되는 사항을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직소금지’의 효력이 적용된다.¹³⁾ 또한, 중재 판정부는 중재절차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하고, 중재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정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절차 진행 중에 진술, 증거제출, 구두 변론 등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조건은 ‘균등’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중재를 활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중재판정은 인민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구속력이 있어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예비적 합의’를 하는 경우 중국법상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¹⁴⁾

중국은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C’)¹⁵⁾ 산하의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1988년 확대 개편하면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IETAC)이하, ‘CIETAC’

9) 섭외중재에 관해서는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7장에서 제65조 섭외중재의 범위, 제66조 섭외중재위원회의 설립, 제67조 섭외중재위원회의 임용, 제68조 섭외중재의 증거보전, 제69조 섭외중재 개정(開廷) 기록, 제70조 섭외중재 재결의 취소, 제71조 재결의 불(不)집행, 제72조 외국의 중재재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제73조 섭외중재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10) ‘중재위원회’는 ‘국내중재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고 각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예속관계에 있지 않으며, 사단법인으로 직할시와 성·자치구·인민정부 소재지 시에 설립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 구(區)를 두고 있는 기타 시에 설립할 수 있으나 행정구획별로 설립 하지는 아니함.

11)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10조.

12)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는 서면형식에 의해야 하며, ㉠ 중재합의의 의사표시, ㉡ 중재사항 ㉢ 중재위원회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5조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법원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소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4)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9조.

그러나 최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선택적 중재조항은 무효이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첫 번째 실제적 심리전까지 반대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M. Lin, “Supreme People’s Court Rules on PRC Arbitration Issues,”(2007) 24(6)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p.597, pp.601.

15)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C)의 대내 명칭은 ‘중국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IC)’라 함.

이라 칭함)를 설립하고¹⁶⁾ 1988년 9월 12일 「CIETAC 중재규칙」을 제정 하여¹⁷⁾ 국제분쟁 사건,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지역과 관련된 중재사건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6년에 「CIETAC 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중재관할범위를 국내 상사 중재사건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었다.

Ⅲ. 해협양안중재센터(海峽兩岸仲裁中心: ACAS)의 개관¹⁸⁾

중국은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29일 ‘양안중재센터’를 복건성(福建省)의 평탄종합시범지구 대만창업원(平潭綜合試驗區台灣創業園)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⁹⁾ ‘양안중재센터’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분쟁 및 양안 기업 간의 발생하는 경제관련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중국 최초로 설립된 민간 중재기관으로서 양안의 경제·무역교류법제 환경조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안중재센터’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과 국가 유관부서의 지원 하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서 조직·설립하였으며, 중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구성원은 중국무역추진위원회(中國國際商會)에서 양안의 법률 실무영역에서 유명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여 중재센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양안중재센터’는 대만출신 중재인 25명을 포함하여 중국·홍콩·마카오·대만의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에 능통한 실무가 200명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작성한 “중재인 명부”(仲裁員名冊)를 구비하고 있다.²⁰⁾

‘양안중재센터’의 설립으로 중국은 해협 양안 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양안 당사자들이 약정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양안중재센터’ 관할의 민·상사(海事사건 포함) 관련 계약과 기타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재 이외에도 ‘양안중재센터’에서는 ‘조정(調解) 또는 기타 소송 이외의 분

16)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貿易仲裁委員會, CIETAC)이외에 지역별로 北京仲裁委員會, 太原仲裁委員會, 武漢仲裁委員會, 廣州仲裁委員會, 廈門仲裁委員會, 合肥仲裁委員會, 蚌埠仲裁委員會, 深圳仲裁委員會, 上海仲裁委員會, 鄭州仲裁委員會, 杭州仲裁委員會, 恩施仲裁委員會, 長春仲裁委員會 등이 있다.

17) 현행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2014년 11월 4일 개정·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18) 양효평, 전개논문, pp.361-363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임.

19) 양안중재센터, 접속일 2017.8.5. <http://www.acas.org.cn>

20) 范利敏 姜業宏, “《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正式實施-打造仲裁先行窗口 助推兩岸經貿法制化”, 中國貿易報, 2016.6.4.자. 접속일 2017.08.05., <http://www.chinatradenews.com.cn/>.

쟁해결 방법'을 통해 양안 간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관련 부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기타 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향후 '양안중재센터'의 중재판정이 양안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양안 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민간 중재기관인 '양안중재센터'가 양안 법제 교육 및 세미나, 좌담회 등의 다양한 교류형식을 통해 새로운 경제교류협력 방안 및 법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양안 간의 법제 실무협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IV.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의 특징과 주요 내용

1.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의 특징과 구성²¹⁾

'양안중재센터'에서는 양안 간의 분쟁해결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교류 및 투자에 있어서 양측의 경제제도와 상거래 관습 및 법제의 차이로 발생하는 상사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양안 간의 발생한 상사분쟁 해결의 경험과 국내외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양안중재규칙」을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²²⁾

「양안중재규칙」의 초안은 양안의 중재인·법률 전문가·법학자 및 최고인민법원 민사 4庭의 의견을 참조 하였고, 양안 관계의 특수성 및 경제·무역관련 분쟁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서 시행하고 있는 「CIETAC 중재규칙」 및 관련 법률·관행과 양안 중재의 실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양안중재규칙」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6장 77개의 조문으로 제1장 총칙(제1조-제10조),²³⁾ 제2장은 중재절차를 총 3개의 '절'로 구성하여, 제1절 중재신청, 답변, 반대신청(제11조-제23조)·제2절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제24조-제34조)·제3절 심리중재(제35조-제47조),²⁴⁾ 제3장 중재판정(제48조-제55조),²⁵⁾ 제4장 간이절차(제56조-제64조),²⁶⁾ 제5장 소액분쟁

21) 양효령, 전제논문, pp.361-363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임.

22) 劉冰, “《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述評-以比較研究爲視角”, 「海峽法學」, 第4期, 2016.12, pp.49.

23) 「양안중재규칙」의 제1장 총칙(제1조-제10조)에서는 중재센터, 기구 및 직무책임, 중재사건의 접수·심사 범위, 중재규칙의 적용, 중재합의, 중재합의 및 / 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중재지, 송달 및 기간, 신의성실의 원칙, 이의신청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음.

24) 제2장(중재절차) 제1절에는 중재절차 개시, 중재신청, 다수계약에 대한 중재, 답변, 반대신청, 당사자 추가, 중재병합, 중재서류의 제출과 교환, 중재서류의 부수, 중재대리인, 보전 및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

절차(제65조-제73조)²⁷⁾ 및 제6장 부칙(제74조-제77조)²⁸⁾을 규정하고 있다.

「양안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중재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중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양안의 「중재법」을 참조하여 중재판정부에서 직접 부여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중재절차를 보통·간이 및 소액 중재절차로 분류하고 각각의 중재절차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다수의 관련 분쟁사건을 병합심리 혹은 중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재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2.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의 주요 내용

(1) 중재합의의 형태와 효력

중재는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따른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중재절차의 정당성은 ‘중재합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중재합의를 「뉴욕협약」에서는 “계약상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⁹⁾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규정한 중재조항이나 기타 서면방식으로 분쟁의 발생 전 또는 발생 후에 합의한 중재신청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내용에는 중재합의의 의사표시, 중재사항, 중재위원회 선정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하고,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보충합의를 할 수 있으며, 보충합의가 이루어지

절에는 중재인의 의무, 중재판정부의 중재 인원, 중재인 선정 혹은 지정, 3인 중재인의 중재판정부 구성, 1인 단독중재 구성, 다수 당사자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 선정의 고려 요건, 고지,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인의 교체, 다수 중재인에 의한 중재절차 계속을 규정하고 있고, 제3절에서는 심리방법, 심리 장소, 개정 통지, 비공개 심리, 당사자의 필석, 심리 기록, 입증, 증거조사, 중재판정부의 조사 및 증거수집, 전문가 보고 및 감정 보고, 중재절차 중지, 중재신청의 철회와 사건의 기각, 중재와 조정의 결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25) 제3장(중재판정)에서는 중재판정의 기한, 중재판정, 부분판정, 비용부담, 중재판정서의 결정, 중재판정의 보충, 중재판정의 이해를 규정하고 있음.
- 26) 제4장(간이절차)에는 간이절차의 적용, 중재 통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답변과 반대신청, 심리방식, 개정 통지, 중재판정의 기한, 절차 변경, 본 중재규칙의 기타 규정에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 27) 제5장(소액분쟁 절차)은 소액분쟁절차의 적용, 중재 통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답변과 반대신청, 심리방식, 개정 통지, 중재판정의 기한, 절차의 변경, 본 중재규칙의 기타 규정에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 28) 제6장(부칙)에는 중재 언어, 중재비용 및 실제비용, 중재규칙의 해석, 중재규칙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 29)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p.59.

지 않은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가 된다.³⁰⁾ 또한, 약정한 중재합의 사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범위에 벗어나거나, 민사행위 무능력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일방 당사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중재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중재합의는 무효가 된다.³¹⁾

중재합의의 실제적 및 형식상의 유효성과 효력에 관해서는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이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재 당사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계약에 약정한 중재조항이나 다른 방식으로 합의한 중재 신청의 서면합의이고, 중재합의의 서면형식에는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중재 신청서와 중재답변서의 교환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표명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³²⁾

더욱이, ‘양안중재센터’에서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특수성 및 중재법을 참조하여 중재관정부에서 직접 부여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³³⁾

상술한 내용 이외에, 「양안중재규칙」에서는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과 「CIETAC 중재규칙」³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조항의 독립성(autonomy)’을 인정하고 있다. 즉, 「양안중재규칙」 제5조 4항에서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항으로 보고, 계약에 부속된 중재합의도 계약의 다른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인 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해지·중지·양도·실효·무효·未발효·취소 및 성립 여부는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중재합의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주계약이 반드시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중재지 결정

중재지는 중재심리를 개최하는 물리적 장소의 의미 이외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지법이 중재규정을 보충하는 절차법의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제출, 심리에의 출석, 중재비용 등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중재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 피신청인 소재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 신청인 국가에서 진행하는 방식 및 제3국을 중재지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중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간

30)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16조와 제18조.

31)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17조.

32)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제5조 제1항-2항.

33) 「양안중재규칙」 제6조.

34)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19조와 「CIETAC 중재규칙」 제5조 제4항.

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지로는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³⁵⁾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의 경우 중재지 결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모두 “당사자가 중재지에 대해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³⁶⁾는 규정을 두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중재지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확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 「양안중재규칙」에서는 ‘양안중재센터 소재지’를,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사건을 관리하는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分會)/ 중재센터 소재지’를 중재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모두 상술한 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등을 고려하여 기타 지역’을 중재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³⁷⁾ 해당 중재기관이 위치한 국가를 중재지로 정하면서 중재기관이 달리 중재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3)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제도는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 해결을 제3자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제3자의 역할과 책임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이 된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정된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 또는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라고 한다.³⁸⁾ 중재판정부는 실제 판단의 결정권, 중재판할에 대한 심사·중재지 및 심리장소의 결정·중재언어의 선정·증거조사와 전문가 선정·대리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권 등의 중재절차에 관한 결정권 및 중재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중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⁹⁾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에 관해 「양안중재규칙」,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및 「CIETAC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중재 당사자들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재인 명부(仲裁員名冊)”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만약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를 대신하여 중재위원회의 주임 혹은 해협중재센터의 주임이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법판결에 대한 불공정성의 문제를 희석시키고 중재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⁴⁰⁾

35) 김상호, “남북 상사중재기구의 운영과 실행과제”, 「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2008.8, pp.69.

36)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제7조 제1항.

37)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제7조 제2항.

3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125.

39) 임성우, 전게서, p.154-159.

40) 「양안중재규칙」 제27조 제4항과 제28조,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 제30조와 제31조, 「CIETAC 중재규칙」

더욱이,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재인 명부” 이외의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임 혹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만약 “중재인 명부” 이외의 중재인을 선임할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에 의해 확정된 후에 해당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¹⁾ 이 규정은 국제중재 실무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을 법에 근거한 확인절차를 거쳐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는 동시에 중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좋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간이절차’를 신설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있어 ‘단독중재인’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인을 보통절차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중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특히, 「양안중재규칙」에서는 보통절차와 간이절차 이외에, ‘소액분쟁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인 선정 기한을 보통절차와 간이절차 보다는 짧은 7일 이내로 규정하고,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⁴³⁾

(4) 다수의 계약 및 중재의 병합

소송의 경우 관련성이 있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 계속된 소송을 변론의 병합이나 병행심리의 방법으로 동일한 재판부에 의하여 한번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참가도 보다 유연성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재는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의해 계약단위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본질상의 차이로 인하여 내재적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다수의 계약이나 중재 병합 등의 절차는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에 의한 합의의 범위 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근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중재규칙들이 많아지고 있다.⁴⁴⁾

「양안중재규칙」에서는 다수의 계약에 대한 분쟁을 동일한 중재사건에 병합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 다수의 계약이 주계약과 부수계약으로 구성 되었거나, 혹은 다수의 계약에 관계된 당사자가 동일하고 법률관계의 성질이 동일한 경우, ㉡ 계약 분쟁이 동일한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에 기인한 경우, ㉢ 다수 계약의 중재합의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경우에 신청인의 청구에 의해 다수 계약의 분쟁을 1건의 중재사건으로 병합심리 할 수 있다.⁴⁵⁾

제25조, 제27조.

41) 「양안중재규칙」 제25조 제1항과 제26조, 「CIETAC 중재규칙」 제26조 제2항.

42) 「양안중재규칙」 제58조.

43) 「양안중재규칙」 제67조.

44) 임성우, 전계서, p.245-246 참조.

또한 「양안중재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건의 일방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2건 혹은 2건 이상의 중재사건을 병합하여 1건의 중재사건으로 심리가 가능하며, ‘양안중재센터’에서 중재사건의 병합심리를 결정할 경우에는 각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과 각 사건의 중재인에 대한 선정 및 지정 상황을 포함한 관련 중재사건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중재사건의 요건을 살펴보면, ㉠ 각 사건의 중재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기인하여 제기된 경우, ㉡ 각 사건의 중재청구가 다수의 중재합의에 기인하여 제기된 경우, 이 경우 다수의 중재합의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중재사건 당사자들이 동일하고 각 분쟁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 ㉢ 각 사건의 중재청구가 다수의 중재합의에 기인하여 제기된 경우로, 이들 다수의 중재합의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고 또한 관련된 다수의 계약이 주계약과 부수계약으로 구성된 경우이다.⁴⁶⁾

「양안중재규칙」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병합한 중재사건은 최초 중재절차가 개시된 중재사건까지 병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사건을 병합한 경우에는 ‘양안중재센터’ 사무처(秘書處)에 의해 중재절차의 진행이 결정되고, 만약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절차 진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⁷⁾

(5) 중재 당사자의 추가

국제중재 실무에서는 이미 제기된 중재절차에 새로운 당사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인입(joinder)’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제3자가 이미 진행 중인 중재절차에 스스로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참가(intervention)’라고 한다.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사건과 관계된 관련자·사건 당사자 및 비당사자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중재사건의 신청인으로 한사람 혹은 다수의 당사자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중재 당사자의 추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⁴⁸⁾

「양안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절차 중에 표면적으로 중재합의에 구속을 받는 제3자를 중재절차의 당사자로 추가할 것을 원하는 일방 당사자는 양안중재센터에 해당자를 중재절차의 당사자로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당사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당사자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될 당사자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⁴⁹⁾

45) 「양안중재규칙」 제14조.

46) 「양안중재규칙」 제19조 제1항과 제2항.

47) 「양안중재규칙」 제19조 제3항과 제4항.

48)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제18조.

49) 「양안중재규칙」 제18조 제1항.

사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중재사건의 사건번호, 추가된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및 통신수단, 당사자 추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 사건 개요와 사유 및 중재청구 등의 일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⁵⁰⁾ 만약 당사자 중의 일방이 당사자 추가절차에 대한 중재합의 또는 중재사건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양안중재센터’에서 관할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⁵¹⁾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 추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양안중재센터’ 사무처(秘書處)에서 중재절차 진행을 결정하고, 만약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절차 진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⁵²⁾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가 추가된 경우, 「양안중재규칙」의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 혹은 중재센터의 주임에게 위임하여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당사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당사자 추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 구성을 포함하여 이미 진행 중인 중재절차에 대해 추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센터의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센터의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다.⁵³⁾

또한, 「양안중재규칙」의 당사자의 답변 및 반청구에 관한 규정도 추가된 당사자에게 적용되며, 추가된 당사자의 답변 및 반청구 기한은 당사자가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된다.⁵⁴⁾

(6) 간이절차⁵⁵⁾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 → 수리와 답변 → 중재청구의 포기, 변경과 반대신청 →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원의 선정 → 개정 → 심리 → 판정 → 판정의 이행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과는 달리 중재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양안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절차’의 경우 상술한 중재절차 순으로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CIETAC 중재규칙」과 비교하여 다음의 상이한 점들을 규정하고 있다.

50) 「양안중재규칙」 제18조 제2항.

51) 「양안중재규칙」 제18조 제3항.

52) 「양안중재규칙」 제18조 제4항.

53) 「양안중재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

54) 「양안중재규칙」 제18조 제6항.

55) 「양안중재규칙」 제4장(제56조-제64조).

1) 적용대상

「CIETAC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금액이 500만 위엔(인민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또는 분쟁 금액이 500만 위엔(인민폐)을 초과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간이절차를 신청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혹은 당사자 간에 간이절차에 합의한 경우에 본 절차가 적용 된다. 그러나 「양안 중재규칙」에서는 분쟁금액을 50만 위엔(인민폐) 이상 500만 위엔 이하의 사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재 통지 기관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위원회’의 통지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안중재규칙」에서는 ‘보통절차’를 포함한 ‘간이 및 소액 분쟁절차’ 모두 ‘양안 중재센터의 사무처(秘書處)’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답변 및 반대신청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일반절차에서는 모두 피신청인이 중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이 있을 경우 4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중재규칙」에서는 답변과 반대신청 및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모두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기 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으나, 만약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양안중재규칙」에서는 양안중재센터의 사무처(秘書處)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간이절차의 진행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 따르면 모두 중재판정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구술심리에 의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당사자들이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한 서면자료 및 증거만을 근거로 중재판정부에서 서면심리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는 구두 심리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

5) 중재판정부의 심리 통지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모두 중재판정부가 심리일자를 결정한 후 심리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기간 연장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중재 판정 기한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중재절차의 변경 가능여부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간이절차에서 보통절차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재절차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적용대상의 분쟁 금액을 500만 위엔(인민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소액분쟁 절차의 신설

2012년 개정된 「중국 민사소송법」에서 처음으로 ‘소액분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⁵⁶⁾ 일반 분쟁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데에서 오는 비용문제와 시간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양안중재규칙」에서는 「중국 중재법(中國仲裁法)」과 「CIETAC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액분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소액분쟁사건의 해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양안중재규칙」의 중재 통지기관과 심리방식에 관한 규정은 소액분쟁 절차와 간이절차가 동일하지만, ‘분쟁대상 사건·중재판정부 구성 기한·답변과 반대신청 기간·심리 통지 기한·중재 판정 기한 및 절차변경에 적용되는 분쟁금액의 기준’은 간이절차보다 훨씬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⁵⁷⁾

분쟁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양안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 간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소액분쟁 절차에 적용이 되는 대상은 분쟁 금액이 50만 위엔(인민폐) 미만의 사건 또는 당사자가 소액분쟁 절차를 활용하기로 협의한 경우 소액분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답변과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기한에 관해 「양안중재규칙」에서는 간이절차의 규정 보다 짧은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심리 통지 기한은 중재판정부가 심리 일자를 결정한 후 심리 7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6) 「중국 민사소송법」 제162조에서는 “목적물의 가액이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전년도 구직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1심 중심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7) 「양안중재규칙」 제5장(제65조-제73조).

중재 판정 기한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해야 하는 간이절차에 비해, 「양안중재규칙」의 소액분쟁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해야 하고, 중재절차의 변경 및 대상 금액에 대해 절차변경이 가능한 적용대상의 분쟁 금액을 50만 위엔(인민폐)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보통·간이 및 소액분쟁 절차의 차이점

	보통절차	간이절차	소액분쟁 절차
분쟁대상 금액	없음	50만 위엔(인민폐) 이상 - 500만 위엔 이하의 사건	50만 위엔(인민폐) 미만의 사건 또는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답변 및 반대 신청의 답변서 작성 기한	45일 이내/ 80일 이내	20일 이내	15일 이내
심리통지 기한 및 연장신청 기한	심리 20일 이전 / 통지서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	심리 15일 이전 / 통지서 수령한 날로 부터 3일 이내	심리 7일 이전 / 통지서 수령한 날로 부터 3일 이내
중재판정 결정 기한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6개월 이내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3개월 이내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45일 이내
절차변경 대상 금액	없음	500만 위엔(인민폐) 이상	50만 위엔(인민폐) 이상

* 「양안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함.

(8) 중재와 조정의 상호 결합

조정은 중재와 같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지만 제3자의 조정인에 의해 내려지는 조정안은 구속력이 있는 중재판정을 통해 중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와는 달리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중재와 조정은 본질적으로 각기 다른 분쟁해결 수단이므로 중재기관이 조정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에도 조정과 중재는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⁸⁾

이에 반해,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인이 중재과정에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동일한 분쟁에 있어서 중재와 조정이라는 두개의 분쟁해결방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⁵⁹⁾ 즉,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중재절차를 개시하고 당해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재인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58) 임성우, 전계서, p.258-259 참조.

59) 중재와 조정이 상호결합 된 방식으로는 ‘선 조정 후 중재’, ‘조정과 중재의 동시 진행’, ‘중재 중 조정’ 및 ‘중재 후 조정’등이 있음.

않을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모두 중재와 조정의 상호 결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⁶⁰⁾ 즉, 양 당사자 혹은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원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만 중재판정부가 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양안중재센터가 적절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조정절차 진행에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일방 당사자가 조정의 종료를 요청하거나 혹은 중재판정부에서 조정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재개하여 중재판정을 해야 하고, 중재 당사자는 조정절차, 사법절차 혹은 기타 다른 절차에서 상대 당사자 혹은 중재판정부에서 발표한 의견, 관점, 제안 및 제의 등을 본인의 주장, 답변, 또는 반대 신청의 근거로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조정절차 개시 전에 당사자 간에 자체적으로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화해협의를 이룬 경우 양안중재센터에 중재합의 및 그 화해협약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요청하고, 화해협약의 내용에 따라 중재판결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안중재센터 주임은 1인 단독중재인을 지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분쟁판정을 내려야 한다.

V.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의 시사점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선언’ 이후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도가 뒷받침 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92년 7월 1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규정한 바 있고,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2003년 8월에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⁶¹⁾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중에 분쟁해결 합의서의 후속 합의로 2003년 10월 12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라 칭함)를 체결

60) 「양안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 제47조.

61) 남북경협 4대 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및 「남북 사이의 청산결체에 관한 합의서」를 말하며, 2003년 8월 20일 발효됨.

하고,⁶²⁾ 남북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상사중재기구를 통해 해결 하고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협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해 1차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의 방법으로, 2차적으로는 ‘중재’와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⁶³⁾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⁶⁴⁾

이에 반해,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이하 ‘양안 ECFA’이라 칭함)⁶⁵⁾의 후속협정으로 「ECFA 투자보장협정(海峽兩岸投資保護和促進協議, Cross strait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이하, 「ECFA 투자협정」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투자분쟁해결 방법을 법제화하여 양안 투자자의 권익보장과 함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교류 협력의 가속화를 꾀하고 있다. 더욱이 ‘양안중재센터’를 설립하고 「양안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분쟁해결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⁶⁶⁾

따라서, 남북한 간의 분쟁해결제도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남북 양측의 정치적 논리와 색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우리 상사중재위원회와 같이 비정부기관의 중재 전문가, 법률가 및 국제거래 실무자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 중재 당사자의 분쟁해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중재규칙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⁶⁷⁾

2. 중재인 선정의 요건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거법 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구성에 따라 중재합의에 도달하는데 참여하게 대립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2006년 8월 1일 남북한 간에 발효됨.

63)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64) 또한, 2013년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이 정상화 되면서 2013년 9월 11일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운영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65) 2010년 6월 29일 중경에서 체결 되었으며, 동년 9월 2일 발효됨.

66) 양효령, 전계논문, pp.366-367.

67) 법무부가 작성한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안)」은 총 7장 6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부가 작성한 중재규정(안)은 총 7장 6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김광수,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6, pp.19-26 인용.

「상사분쟁합의서」에 따르면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자로서,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이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⁶⁸⁾ 중재인의 국적이거나 중재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⁶⁹⁾

중국의 경우, ‘양안중재센터’에서는 양안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대만 그리고 제3국의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에 능통한 실무가들로 구성된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⁷⁰⁾ 중재인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들을 통해 중재판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국의 중재에 대한 해결방식이 배제될 경우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재인 명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이 “중재인 명부”를 확정할 때에 중재인의 국적을 남북한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제3국의 중재전문가(특히, 중국 CIETAC의 중재인), 국제무역·투자법제 및 실무에 정통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의 중재인을 포함하게 된다면, 만약 의장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남북 양측 중재인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상사분쟁합의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의한 중재인 선정’ 보다는 훨씬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인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북측 중재인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전문분야 실무경험 등의 요건과 함께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재인에 대한 자격박탈 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⁷¹⁾

3. 중재 대상의 확대

「상사분쟁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정에 따르면⁷²⁾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 분쟁사건은 ‘상사분쟁’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는 상거래 분쟁 이외의 노사분쟁, 세금과 같은 행정적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수단이 없어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⁷³⁾

현재 남북 양측에서 채택한 합의서의 중재 대상에 대해 ‘상사분쟁만’이 분쟁 대상이 된

68)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5조-제6조.

69) 2006년 7월경 우리정부는 북측에 남측 중재위원(법무부 법무실장<위원장>, 통일부 기획관, 산자부 기획관,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장) 명단을 전달한 바 있으며, 2007년 4월 16일 ‘대한상사중재위원’을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위원은 2007년 5월 2일 남북 상사분쟁 중재사무를 전담하는 ‘남북상사중재실’을 설치 하였음. 최기식, “개성공단의 국제화 선결과제로서의 상사분쟁 해결 제도화 방안”, 「통일과 법률」, 법무부, 2014, pp.125.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엠플러스, 2016, p.326.

70) 范利敏 姜業宏, “《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正式實施-打造仲裁先行窗口 助推兩岸經貿法制化”, 中國貿易報, 2016.6.4.자. 접속일 2017.08.05, <http://www.chinatradenews.com.cn/>

71) 양효령, 전계논문, pp.367.

72)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와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

73) 김광수, 전계논문, pp.7.

다는 견해와 상사분쟁 이외에도 ‘노동분쟁’이나 ‘행정 분쟁’까지도 포함된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상사중재위원회’의 명칭과 부합하고 「개성공단 부속 합의서」 제1조에서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관할 대상을 ‘상사분쟁’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폭 넓은 남북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 남북합의서 및 북측의 법규를 폭 넓게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개성공단 내의 노동분쟁이나 행정 분쟁 등을 처리할 별도의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활동’이 노사관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사건이 ‘투자와 관련한 분쟁’이기 때문에 상사분쟁 이외에도 노동분쟁이나 행정 분쟁까지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⁴⁾

「ECFA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은 투자분쟁과 투자와 관련한 ‘투자상사분쟁(投資商事爭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안중재규칙」에서는 “양안중재센터 관할의 민·상사(海事 포함) 관련 계약과 기타 재산권에 관한 분쟁, 그리고 관련 부처의 수권에 근거한 기타 사건”을 중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상사’라는 개념에 대한 이견을 향후 남북한 양측이 합의서를 개정할 경우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북한의 법제 환경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중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남북경협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의 경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중재지 결정의 구체성 명시

중재지는 법적 개념으로서 중재절차가 주로 행하여지는 곳을 말하며, 보통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⁷⁵⁾

「상사분쟁합의서」와 「양안중재규칙」 모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중재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상사분쟁합의서」에서는 “중재 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양안중재규칙」에는 “만약 당사자가 중재지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양안중재센터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정하거나, 혹은 중재센터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 지역을 중재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⁶⁾

74) 최기식, 전계논문, pp.131-132 인용.

75) 「한국 중재법」 제21조 제1항,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76)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1조와 「양안중재규칙」 제7조.

중재지의 결정은 중재절차에 있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성을 요한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중재사건에 있어서 중재지 결정이 남북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문제가 없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체제와 법제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재실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중재지법주의, 중재인 결정주의, 피신청인의 소재지 국가 또는 중재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국가 등의 원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하는 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5. 다양한 중재절차 신설의 필요성

중재제도는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분쟁 해결 방안의 하나로, 중재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에 의한 집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양안중재규칙」에서는 중재절차를 ‘보통·간이 및 소액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관련 분쟁사건을 병합심리 혹은 중재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재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양안의 「중재법」을 참조하여 중재판정부에서 직접 부여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⁷⁾

이렇듯,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남북한 경제교류의 분쟁 대상 및 유형, 목적물의 가액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맞춤형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남북경협에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중재절차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6. ‘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 및 중재인’의 활용 방안⁷⁸⁾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경험활동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남측 투자기업의

77) 「양안중재규칙」 제6조.

78) 양효령, 전제논문, pp.368-369 인용하여 작성한 것임.

투자활동에 대한 손해는 국제법에 의한 법률적인 해결 보다는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 남측 기업의 일방적인 손해의 감수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BIT)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을 ‘국내법원’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판정부’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라 칭함)의 전문을 살펴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은 1991년 유엔총회에서 각기 다른 의석을 가짐으로써 2개의 회원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으로 대만을 ‘중국과 다른 법률이 시행되는 동일 국가 내의 다른 법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⁷⁹⁾ ISD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투자분쟁센터(ICSID)’의 중재 또는 제3국을 통한 중재의 방법으로 투자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ECFA 투자협정」에서는 5가지 방식의 다층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⁸⁰⁾ 또한 투자보상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분쟁은 사전에 지정된 투자분쟁해결기관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ECFA 투자협정」의 부속서에 ‘투자보상분쟁 조정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여 ISD 해결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⁸¹⁾

남북한 간에 체결한 「투자보장합의서」와 「상사분쟁합의서」에는⁸²⁾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과 북한 정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 중재 또는 조정의 방법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는 별도의 특별규정이거나,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구대법」에 서처럼 북한의 사법체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외국투자자를 위해 분쟁해결방법으로 국제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관련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⁸³⁾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북 양측의 경제교류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상술한 3개의 합의서에 따른 분쟁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3국의 중재기관 혹은 이들 기관의 중재인’을 ‘의장중재

79) ‘홍콩 CEPA’와 ‘마카오 CEPA’는 중국 국내법인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내의 관세독립지역과 체결한 ‘역내협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WTO에 2001년 12월 11일과 2002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Tawan)·펑호(Penghu)·금문(Kinmen)·마조(matsu) 단독관세지역’의 명칭으로 각각 가입 함.

80) 양효령, 전계논문, pp.366 참조.

81) 양효령, 상계논문, pp.360 참조.

82)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과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3조.

83)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81조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구대법」 제73조.

원'으로 선임하여 중재를 진행하거나, 또는 '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의 중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서 개정 시 다양한 방법의 분쟁해결 조항을 보충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의 중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쟁의 대상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용(간접 수용을 포함한) 및 국유화 분쟁에만 한정하지 말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모든 투자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애플러스, 2016
- 김상호, “남북 상사중재기구의 운영과 실행과제”, 「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중재학회, 2008
- 김광수, “개성공단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중재학회, 2014
- 양효령,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최기식, “개성공단의 국제화 선결과제로서의 상사분쟁 해결 제도화 방안”, 「통일과 법률」, 법무부, 2014
- 曾憲義 總主編, 「國際商事仲裁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 曾憲義 總主編, 「仲裁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 吳杰 編著, 「仲裁法精要与依据指引」, 人民出版社, 2005
- 劉冰, “《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述評-以比較研究爲視角”, 『海峽法學』, 2016
- 范利敏 姜業宏, “《海峽兩岸仲裁中心仲裁規則》正式實施-打造仲裁先行窗口 助推兩岸經貿法制化”, 中國貿易報, 2016.6.4.자. 접속일 2017.10.05, <http://www.chinatradenews.com.cn/>
- “海峽兩岸仲裁中心成立”, ‘中國貿易報’, 2015.12.31.자 접속일 2017.10.05, <http://www.chinatradenews.com.cn/>
- 海峽兩岸仲裁中心(해협양안중재센터) <http://www.acas.org.cn>

ABSTRACT

Features of Arbitration Rules of Chines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nd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Rules of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Hyo-Ryoung Yang

As the disputes in the investment and civil/commercial sectors of China and Taiwan have increased due to active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 is addressing cross-strait disputes through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recent years, th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CAS) has been establish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ross-strait parties, while ACAS Arbitration Rules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ACAS Arbitration Rules are prepared by referring to the Arbitration Act of China and Taiwa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practic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ity of the cross-strait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nd trade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has compared the features an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with those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This refers to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form and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decision of place of arbitration, and organization of arbitral tribunal; the provision of consolidation of multiple contracts and arbitration, and the provision of joinder of arbitration parties, which are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 streamlining arbitration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common, simple, and small sum arbitration proceedings which require shorter arbitr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arbitration object; and regulations on the “interconnection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in China, there are some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which will be applied to solve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suggesting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the rapid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requirements for selecting arbitrators, expansion of the object of arbitration, specification of concreteness in deciding the place of arbitration, need to create a variety of arbitration proceedings, and applic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or Third Power Arbitration Agency.

Key Words :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CAS), ACAS Arbitration Rules,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Arbitration Rules of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rbitration proceedings, implications